

##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II)

공동집필 · 김기령 변호사 킹로드특허법률사무소  
나경수 이사 ESAK

### < 목 차 >

1. 서론
2. 발전과 확립
3. 미국 PL 소송의 현황과 특징
4. 개선과 개혁
5.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6. 개정

### 3. 미국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특징

#### 1)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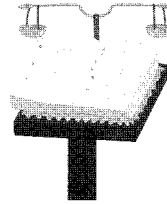
1962년의 그린맨(Greenman)사건 이후 제조물결함에 의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묻는 엄격책임의 확립과 소비자보호의식의 고양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물책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배상액의 고액화현상도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소송 사건수는 연방법원의 경우 1974년에 1,579건이었던 것이 1988년

에 1만 7,140건에 달하게 되어 14년간 약10.9배의 증가가 있었다.

또한 법원에서 지급을 명한 제조물책임소송의 배상액도 해마다 급등하여 1988년에 평균배상액이 1,535,944달러에 이르고 있다. 고액배상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백만달러 보상(Million dollar Award)판결의 건수도 1962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8년의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그 건수는 81건으로 인신사고소송에서의 전체 474건중 17.1%를 점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의 두번에 걸친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과 보험인수의 거부로 보험없이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를 {제조물책임 위기}와 {보험 위기}라고 한다. 제조물책임 위기의 원인은 1960년대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송의 증가와 미국의 독특한 소송제도 및 보험회사의 영업정책 등의 복잡한 요인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엘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



임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이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제도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는 50항목이나 되는 [민사재판제도 개혁 제안]을 1991년 8월에 공표하였다.

개혁의 주된 것은 ①공판전의 증거개시요구의

제한 ②징벌배상금의 상한 설정 ③패소자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원칙의 제한 ④전문가 증인의 적절한 활용 ⑤조정 등의 비소송 해결방법(ADR)의 활용 등이다. 그러나 무과실 제조물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폐지하는 제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PI소송사건의 추이

| 연 도  | 합 계    | 인신상해사건 |        |     |     |     |        | 재물손괴<br>사건 등 |
|------|--------|--------|--------|-----|-----|-----|--------|--------------|
|      |        | 석면     | 석면이외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  | 기타     |              |
| 1974 | 1,578  |        |        | 314 | 11  | 112 | 956    | 184          |
| 1975 | 2,866  |        |        | 438 | 301 | 46  | 1,608  | 493          |
| 1976 | 3,696  |        |        | 385 | 160 | 140 | 2,331  | 680          |
| 1977 | 4,077  |        |        | 372 | 198 | 149 | 2,647  | 711          |
| 1978 | 4,372  |        |        | 350 | 237 | 139 | 2,874  | 772          |
| 1979 | 6,132  |        |        | 457 | 699 | 128 | 4,034  | 814          |
| 1980 | 7,755  |        |        | 535 | 283 | 89  | 5,969  | 879          |
| 1981 | 9,071  |        |        | 491 | 256 | 68  | 7,212  | 1,043        |
| 1982 | 8,944  |        |        | 556 | 374 | 122 | 6,856  | 1,036        |
| 1983 | 9,221  |        |        | 574 | 337 | 164 | 6,951  | 1,195        |
| 1984 | 10,745 | 2,788  | 6,889  | 652 | 371 | 133 | 5,733  | 1,068        |
| 1985 | 13,554 | 4,239  | 8,268  | 612 | 278 | 112 | 7,266  | 1,047        |
| 1986 | 13,595 | 5,463  | 6,996  | 656 | 216 | 93  | 6,031  | 1,136        |
| 1987 | 15,143 | 7,774  | 6,371  | 649 | 150 | 99  | 5,473  | 998          |
| 1988 | 17,140 | 10,715 | 5,451  | 623 | 185 | 101 | 4,542  | 974          |
| 1989 | 14,348 | 8,220  | 5,188  | 662 | 185 | 88  | 4,253  | 940          |
| 1990 | 19,428 | 13,687 | 4,992  | 575 | 196 | 330 | 3,891  | 749          |
| 1991 | 13,188 | 7,150  | 5,263  | 547 | 132 | 69  | 4,515  | 775          |
| 1992 | 13,119 | 5,124  | 7,275  | 562 | 119 | 74  | 6,520  | 720          |
| 1993 | 19,774 | 5,683  | 13,276 | 630 | 95  | 65  | 12,486 | 815          |

주) 1974-1984년의 석면소송사건은 인신상해사건의 기타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2) 제조물책임소송 급증의 원인과 사회적인 배경

(1)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과 소송선호의 국민성

제조물책임법리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에는 소비자운동에 의해 출발된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고양이었다. 제품사고에 대한 피해자의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해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도 미국에서는 그것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2) 공적인 피해구제제도의 미비와 두둑한 주머니(Deep Pocket) 이론

자동차사고, 노동재해나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자동차 강제보험, 노동재해보험, 의료보험 등의 각종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3) 과다한 변호사 수

미국에서의 변호사는 약 80만명에 달하며 더욱이 매년 3만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과다한 변호사는 변호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송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제기를 촉구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게 되기도 한다.

변호사 수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이 약

15,000명, 한국은 약 4,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프랑스는 일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고, 독일은 일본의 약4배의 숫자이다.

영국은 법정변호사로서의 배리스터(Barrister)의 수는 약 6,000명에 불과하지만 사무변호사로서의 설리스터(Solicitor)는 약 55,000명으로서 전체 약 61,0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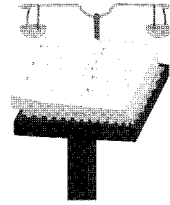
변호사 1명당 국민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310명, 영국이 810명, 독일이 1,280명, 프랑스가 1,900명, 그리고 일본이 8,500명으로서 한국의 약 15,000명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변호사의 수가 너무 적고 미국은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저렴한 제소비용과 소송비용의 당사자부담주의

미국에서의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제기비용(Filing Fees)은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낮으며 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변호사 비용도 후술하는 성공보수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착수금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방법원에는 60달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법원에서는 각각 55달러, 35달러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 있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 소장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인지대가 소송금액에 따라 고액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의 인지대로 257,600엔이 필요하고, 이 인지대 외에 복사비 등의 실비로서 30만엔 정도를 부담하는 것 외에 규정상은 매우 고액인 변호사비용으로서 약200만엔 정도를 “착



수금”으로 원고가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형편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패소자가 스스로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몫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소송비용에는 여러 가지 서면의 준비 및 그 소송제기(Filing)를 위한 여비, 증거수집 및 불가결한 증인에의 Interview의 비용 등도 포함된다. 즉,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원고(소비자)는 패소할 경우에 피고 측(제조업자)의 이러한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각오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스스로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는 비록 패소하더라도 피고 측의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원고에게 있어서는 “소송이 득”이 되고, 피고에게 있어서는 “소송당하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패소한 원고가 승소한 피고 측의 변호사 비용과 재판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소송에 의한 구제를 저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미국식 책임원칙의 이유이다.

(5) 입증책임의 완화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의 우월 (Preponderance of Evidence)만으로 입증책임이 완수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요구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형사소송의 경우이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더라도 가벼운 증명으로 제조업자 측에 책임을 부과하는 폐해는 차지고서라도 일반적으로

는 우리 나라나 일본보다 미국의 원고 쪽이 용이하게 입증책임을 완수하고, 소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용이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구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로서 높은 입증책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신”시킬 정도의 증명책임은 너무 엄격하여 완화된 경우가 있는데 원고는 개연성만 증명할 수 있으면 입증책임을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개연성설이 공해소송 등에 있어서 주장되고, 역학적 증명이나 통계적 증명 이л테면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고가 재판부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입증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6) 독특한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미국의 재판에서는 원고측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Contingent Fee)를 받는 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에는 착수금 기타의 어떠한 사례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화해로 얼마의 배상금지급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승소한 획득 금액의 많게는 3할 내지 4할 정도라고 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처음 약속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식 성공보수제도(Contingent Fee Arrangement)라는 것은 승소, 또는 화해금을 취득한 원고가 그 취득한 손해배상금(화해금)에서 원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제도로써 만약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변호사에게 보

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낮은 금액의 보수만을 지불한다.

소송수취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인정되어 온 성공보수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서는 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종종 성공보수제도 (Contingent Fee)라는 점 ②원고에게 있어서는 클레임을 성공리에 수행한 후에 비로소 변호사보수를 지불할 자금이 생기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성공보수제도 덕분에 충분한 자력이 없는 피해자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유한 (Deep Pocket)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여 배상금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측의 변호사비용도 포함한 일체의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미국식 책임주의에 의하여 미국은 말하자면 “소송하면 이득”인 소송사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성공보수제도가 불법행위책임의 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한 원인이라고 하여 미국 내에서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공보수제도 아래에서는 원고가 취득하는 배상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호사의 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인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원고변호사는 가능한 한 고액의 배상금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성공보수제도는 배상금액을 인상시키는 인센티브를 변호사에게 주고, 이에 따른 고액배상의 속출에 의한 미국 불법행위책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식 성공보수제도에는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인지 EU 각 국에서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활동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변호사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Common Law의 선조격인 영국은 과거 700년에 걸쳐 성공보수제도의 도입을 거부해 오고 있고, 현재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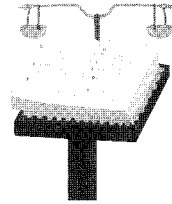
이러한 것에서 유럽은 미국보다도 소송에 대한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미국식 성공보수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본의 변호사는 미국식 성공보수제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배심원도 이러한 변호사보수에 드는 소송비용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높게 평결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의 고액화 현상도 초래되고 있다.

(7) 원고에 유리한 재판제도(배심제도, 증거개시제도)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국민의 배심재판 (trial by jury)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제조물책임소송의 95.4%가 배심(jury)에 의해 심리되고 있다고 한다.

배심의 심리에 의할 경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정 이를테면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의 결정 등은 일반 시민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된 배심원(jurors)이 담당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원고승소의 고액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수중에 있는 소송에 관한 각종 정보의 개시,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를 요구할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우선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질문서(Interrogatories), 문서제출요구(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및 deposition(Deposition) 또는 증언녹취라고도 한다)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문제의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스커버리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예외적인 존재이며, EU각국에서도 디스커버리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계승한 시민법(Common Law)의 선조인 영국에서도 디스커버리의 범위가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언급하듯이 성공보수제(Contingent Fee Arrangement)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재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제도가 소송을 통한 구제를 다소 방지하기도 한다.

#### (8)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회복이 인정되는 손해의 배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가해자의 행위에 특히 악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통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이지만, 후자는 영미법계의 국가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고유한 손해배상이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다른기업에 대한 경고 및 피해자에 대한 후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은 본래 가해자측에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중대한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나 피해자구제라는 미명하에 징벌적 배상을 비교적 안이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배상수준의 고액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는 원고측이 소송원인으로 악의(Bad Faith)의 주장을 덧붙여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도 훨씬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전례없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전례없이 고액화 되었다.

오늘날 대량판매되는 제조물, 특히 석면, DES, Agent Orange, 자동차, 탐폰 및 Dalkon Shield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사건이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속 가속화되었으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고액배상판결을 주도하여 미국 제조물책임에 일대 위기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